

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4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의 20인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임.
-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제정비 운용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: "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"를 "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"로함.
-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근거 정비 (안제1조)
 - 현행 : "법률 제12조 제1항"
 - 개정 : "엄 제14조 제3항"
- 제2조 제1항중 위원은 "11 ~ 15인 이내를 "20인" 이내로 구성한다. (안제2조)
-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 (3 ~ 7인)신설 (안제10조)

□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
- 예산상황
 -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(1회 : 30,000원)
- 기타 참고사항
 - 94개별공시지가조사지침 (건설부)

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"를 "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"를 "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4조 제3항"으로 하고 "토지평가위원회"를 "지방토지평가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중 "11 ~ 15인"을 "20인"으로 한다.

제4조중 "법 제12조 제1항"을 "령 제14조 제1항"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·평가에 관한사항
2.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
제7조 제1항중 "2인"을 "1인"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.

제10조중 "시소속공무원"을 "공무원"으로 "경기도"를 "안산시"로 하고 제10조내지 제12조를 제11조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심의전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 ~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헌 행	개 정 (안)
<p>제명 "<u>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</u>"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<u>토지평가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<u>11~15인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<u>법 제12조 제1항</u>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</p> <p>1. <u>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토지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명 "<u>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</u>"</p> <p>제1조(목적) <u>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</u>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4조 제3항 <u>지방토지평가위원회</u>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20인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<u>령 제14조 제1항</u>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</p> <p>1. <u>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공시지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7조(간사등) ①위원회에 간사 <u>2인</u>과 서기 <u>2인</u>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실과의 실무담당 계장외 1인을 <u>둔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제10조(수당과여비) <u>시소속공무원이 아닌</u>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"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"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시행세칙) (생략)</p> <p>제12조(회의의 비공포) (생략)</p>	<p>제7조(간사등) ①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과 서기 <u>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<u>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0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의 심의전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외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~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</p> <p>②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11조(수당과여비) <u>공무원이 아닌</u> "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"</p> <p>제12조(시행세칙)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 <p>제13조(회의의 비공포)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